

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

◀ 마약류등 해당 여부 확인 신청 민원의 세부 방법, 절차 등 마련(안 제13조의2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물질 등을 취급하는 자 등이 물질 등의 마약류·임시마약류·예고
임시마약류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
처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「마약류관리법」 개정('26.5.26.개정,
'27.5.27.시행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나. 제·개정 내용

- 마약류등 해당 여부 확인 신청 시 신청방법 및 민원 처리기한·보완·
연장 등 세부 사항 규정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마약류등 해당여부 확인 신청 시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에 대한 세부
사항을 규정하여 민원 처리의 투명성·적정성 강화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특이사항 없음

◀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기간의 산정 방법 명확화(안 제23조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허가관청에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하는 기간의 산정하는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 민원이 자주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함

나. 제·개정 내용

-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기간(5일 이내)의 산정 시 인지한 당일,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도록 산정방법을 명확히 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하는 기간의 산정방법을 명확히하여 행정적 명확성을 확보하고 민원질의 감소로 행정력 낭비를 막아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특이사항 없음

- ◀ 의사가 자신에게 직접 처방·투약하여서는 아니되는 의료용 마약류의 범위를 마약·향정신성의약품 주사제로 확대(안 제35조 및 별표 1)

가. 제 · 개정 이유

- 최근 의료진의 마약류 오남용 증가 우려에 따라 의사가 자신에게 투약·처방할 수 없는 의료용 마약류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

나. 제 · 개정 내용

-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직접 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는 의료용 마약류의 범위를 마약(9개성분)·향정신성의약품(13개성분) 주사제로 확대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본인의 마약류 오남용·중독 예방과 진료받는 환자 보호하는 한편 불법 유출 등을 방지하여 국민 전체의 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특이사항 없음

◀ 마약류등 해당여부 확인 또는 마약류 등 승인 민원에 대한 수수료 신설 (안 제51조 및 별표 3)

가. 제 · 개정 이유

-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승인이나 마약류 등 해당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여 수익자부담원칙을 명확히 하도록 「마약류관리법」이 개정('26.5.26.개정, '27.5.27.시행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나. 제 · 개정 내용

- 마약류등 해당여부 확인 또는 마약류 등 승인 민원*을 수수료 납부 대상으로 정하고, 해당 민원에 대한 수수료 금액을 산정함

* 마약류등 해당 여부 확인, 항정신성의약품 제외 인정, 자가치료용 마약류 휴대반입 승인 등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마약류등 해당여부 확인 또는 마약류 등 승인 민원의 수수료 부과를 통해 전문성 있는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민원 처리 적정성 향상 및 불법·신종 마약류 유입 차단 역량 강화에 기여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특이사항 없음

- ◀ 마약류취급자의 위반행위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외부 소프트웨어로 보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 감경(안 별표 2)

가. 제 · 개정 이유

- 마약류 취급보고 오류에 대한 행정처분이 엄격하여 마약류취급소매업자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연계보고하는 것보다 실제 취급량을 정확히 확인 후 수동 입력·보고(웹 직접보고)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어 행정처분 감경 기준을 마련하여 연계보고율을 높이하고자 함
 - * (연계보고) 의료기관, 약국의 처방·조제 소프트웨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(NIMS)을 연계하여 소프트웨어에 있는 취급 정보를 추출해 보고
 - * (웹 직접 보고)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(NIMS)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취급 정보를 수동 입력·보고

나. 제 · 개정 내용

- 의료기관 및 약국이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 중 일부항목을 미보고 시 외부 소프트웨어로 연계보고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 개정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연계보고 확대 유도를 통해 마약류취급자의 취급내역을 신속하게 보고받고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마약류 감시 활동 및 오남용 예방 활동에 활용하여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추진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○ 특이사항 없음